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-

1. 제 안 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2. 제안일자 및 상정일자

○ 제안일자 : 2006년 4월 21일

○ 상정일자 : 제249회 임시회

2006년 4월 21일,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3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○ 현행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여
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

○ 월정수당은 월 1,830,000원으로 정하려는 것임

5. 검토의견

○ 2005년 8월 4일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

자치법이 개정·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

- 월정수당 지급기준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6년 2월 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
-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4월 17일 결정한 월정수당을 월 1,830,000원으로 개정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